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3. 7. 11 선고 2022가단1030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이종린, 조영준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어

담당변호사 김기범

변 론 종 결 2023. 5. 30.

판 결 선 고 2023. 7.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C와 사이에 부천시 D건물, 1층 E호 소재 'F' 영업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체결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97,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2. 1. C와 사이에 공정인가 법무법인 G 증서 2019년 제60호로 양도담보부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하고, 담보의 목적물은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채권자: 원고, 채무자: C

제1조(목적) 채권자는 2019. 2. 1. 102,900,000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제2조(변제방법) 채무자는 위 원금에 대하여 2019. 6. 30.까지 일시불 변제한다.

제3조(이자) 이자는 위 원금에 대하여 연 24%로 정하여 매월 말일 지급하기로 한다.

제9조(강제집행의 인낙) 채무자가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

제10조(양도담보) 채무자는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 사건 물건)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채권자에게 양도하였고 채권자는 이를 양수하였다.

제12조(사용수익) 채무자는 양도담보물건을 점유하는 동안 이를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다. 이때 채무자는 양도담보물건을 그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용하며 사용중의 파손수리비 기타 보존 및 사용수익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14조(담보물의 인도) 채무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양도담보물건의 인도를 요구받았을 때에는 이의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소유권환원) 채무자가 이 채무를 완제하였을 때에는 채권자는 즉시 양도담보물을 채무자에게 양도하여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나. C는 부천시 D건물, 1층 E호를 소재지로 하여 기존에 ‘F’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C는 불상의 시점에 위 업체를 폐업하였고, 이후 C의 동생인 피고가 2019. 3. 25.경 같은

소재지에 같은 상호로 기계공구, 철물 도소매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다. C는 2016년 3월경 다른 형제인 H의 명의로 시흥시 I건물, J호를 소재지로 하여 'K'라는 상호로 기계제작, 반도체장비, 신소재, 금형 등 제작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으나, 2019. 9. 18. 위 업체를 폐업하였다.

라. 피고 명의 사업체와 사업자등록을 달리하는 기존 'F (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는 부천세무서에는 표준손익계산신고 및 표준재무상태신고를 한 사실이 없고, 시흥세무서에 표준손익계산신고 및 표준재무상태신고를 한 사실이 있다. 2017. 12. 31. 기준 위 사업체의 부채 및 자본 총계는 124,187,621원(부채 92,416,357원, 자본 총계 31,771,264원)이고, 2018. 12. 31. 기준 위 사업체의 부채 및 자본 총계는 147,813,265원(부채 92,358,614원, 자본 총계 55,454,651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부천세무서 및 시흥세무서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돈을 대여하여 준 뒤 C로부터 5,500,000원만을 지급받았고, 이에 C에 대하여 나머지 대여금 채권 97,400,000원(= 이 사건 공정증서상 채권액 102,900,000원 - 변제받은 돈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C는 2019년 일자불상경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기존 'F' 사업을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시흥세무서에 신고된 표준재무상태신고 결과에 따르면 2018. 12. 31. 기준 위 사업체의 부채 및 자본 총계는 147,813,265원으로 원고의 C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액을 초과한다. 따라서 위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C에 대한 나머지 대여금 채권액 97,400,000원의 범위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97,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등에 관한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정증서상의 원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2019. 2. 1.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의 영업이 피고에게 양도된 날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피고가 2019. 3. 25.경 같은 소재지에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영업양도일이 2019. 3. 25.경일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위 대여금채권이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F’의 영업이 피고에게 양도된 날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C가 그 무렵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가적 판단(1) - 영업양수도의 존부에 관한 판단

영업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므로,营业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개의 부동산, 유체동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영업재산에 대하여 일괄하여 강제집행이 될 경우에는 영업권도 일체로서 환가될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营业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참조). 상법 제42조 제1항의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营业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다60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C와 피고 사이에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영업양수도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던 장소인 부천시 D건물,

1층 E호에서 피고가 2019. 3. 25.경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또한 피고는 C로부터 부천시 소재 위 영업장 내 유체동산을 양수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위와 같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하였으나, 피고가 기존의 영업을 계승하여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뒤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부천세무서에는 2017. 1. 1.부터 2023. 1. 5.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체 관련 표준손익계산신고 및 표준재무상태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공정증서의 기재사항에 비추어 볼 때 당시 C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재된 이 사건 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고 그 양도담보물은 당시 C가 운영하던 영업장에서 사용하던 물건이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물건의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물건이 반드시 피고에게 양도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C가 운영하던 별개의 사업체인 시흥시 소재 'K' 사업장에 이 사건 물건이 이전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처럼 이 사건 물건 등 C의 영업과 관련된 재산이 다른 곳에 이전되었다면 C가 피고에게 영업자산 중 다른 일부를 양도하였더라도 이를 포괄양수로 평가할 수 없다), 이와 달리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부천시 D건물, 1층 E호에 소재하였던 'F'의 영업에 대하여 피고가 포괄적인 영업양수를 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유 없다.

다. 부가적 판단(2) - 공동담보가액

가사 피고와 C 사이에 포괄적인 영업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천시 D건물, 1층 E호 소재 'F' 관련 영업권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이 얼마인지, 나아가 그 공동담보가액이 원고가 가액배상으로 구하고 있는 피보전채권액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사업장소재지에 비추어 위 사업체의 관할세무서는 부천세무서라고 할 것인데, 부천세무서에는 2017. 1. 1.부터 2023. 1. 5.까지의 기간 동안 위 사업체 관련 표준손익계산신고 및

표준재무상태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 시흥세무서에 표준손익 등을 신고한 사업체는 상호만 동일할 뿐 부친 소재 사업체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1)).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홍

별지

물건의 표시

제품명	제조회사	수량	크기 및 용량
GR-70	(주)가	1	
GR-42	(주)가	1	
	(주)가	1	
SMCC(LIV-500L)		1	
SMCC(LIV-100L)		1	
CAL(WIA E-2000)		1	
SMCC(WIA E-300A)		1	
DMG (CTX3/000)		1	
TANK CO-T141DL		1	
가	(주)가	1	
가	(주)가	1	
가	(주)가	1	
가계용 공구 상자 (주)가			

1) 판단할 증거가 부족하기는 하나, 시흥세무서에 표준손익 등을 신고한 사업체는 시흥시 소재 'K'의 전신인 사업체로서 별개의 사업체일 수도 있다.